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. 100-01 연차료 납부 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?

Answer

-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기준은 설정등록일 기준입니다. 다만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등록일이 97. 7. 1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- 유사디자인의 연차료 납부기준일은 유사디자인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Q. 100-02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?

Answer

-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“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ro.go.kr>) → 나의출원등록조회 → 사건번호로 조회”에서 확인할 수 있고, 또한 연차료 납부기간 2월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멸예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Q. 100-03 복수디자인연차료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nswer

-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말소등록신청서[권리 일부말소]”를 제출하고 연차료를 납부하면 됩니다.

Q. 100-04 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?

Answer

-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“열람(복사, 교부, 재교부, 정정교부)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“열람(복사, 교부, 재교부, 정정교부)신청서”는 특허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료(등본, 사본(서면수령) : 매건 500원)를 우체국의 통상환(우편환) 증서로 교환하여 같이 동봉하여야 합니다.
- 인터넷을 통해 등록원부 교부 신청방법은 “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ro.go.kr>) → 제증명신청 → 제증명 발급신청”에서 등록원부교부신청의 발급신청을 클릭하여 나타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신청인 정보, 등록번호, 신청대상, 신청부수 등이며 발명의 명칭의 경우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.
- 등록원부교부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은행이나 특허청 홈페이지 → 특허로 → 수수료관리 → 특허수수료(제증명 포함)납부→신용카드, 휴대폰, ARS, 계좌이체, 가상계좌, 인터넷지로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. 인터넷 수수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.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납부 즉시 발급되며 수취방법에 따라서 온라인 수령일 경우 “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ro.go.kr>) → 제증명신청 → 제증명 수신함”으로 발급됩니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

